

<p>지국장”으로 하고, 제3항 제1호, 제2호의 “장애인복지 및”을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으로 각각 수정한다. 안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안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제2항중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제6조 제2항 “그 기능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6조(회의)는 “제7조(회의)”로 하고 제6조 제2항의 “소집한다”를 “개최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7조(위원의 임기)는 “제5조(위원의 임기)”로 수정한다. 안 제8조 제1항의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안 제8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안 제9조의 제4항중 “소위원회에 분야별”을 “분야별 소위원회에”로 수정한다.</p>	<p>적립, 관리와 사용 4.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 생활보호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 생활보호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3.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기능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정, 심의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p>
<p>.....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생활보호법 제16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및 생활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중요사항 연구·조정 2. 장애인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제도개선 사항 3. 생활보호사업의 시행계획 및 보호기금의</p>	<p>.....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정, 심의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p>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시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所管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 4.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公印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5時 41分)

○議長 金瓌會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所管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公印條例案, 以上 2件을 一括하여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文化教育委員會 金仁雨議員 나오셔서 이상 2件에 대해서 一括하여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雨議員 존경하는 金瓌會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文化教育委員會所屬 金仁雨議員입니다.

1993年 3月 27日 서울特別市教育監으로부터 提出되어 同年 4月 1日 議長으로부터 當委員會에 回附된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所管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公印條例案의 當委員會의 審査結果를 上程한 順序대로 一括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所管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主要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現行 條例上의 用語 중 廳·所를 官署로, 議事擔當官을 議事局으로 變更하기 위하여 條例를 改正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바 地方財政法施行令의 改正, 그리고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議事局設置條例制定을 根據로 現行 條例上의 用語를 變更하는 것이므로 妥當한 案이라고 判斷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公印條例案에 대한 主要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現行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 議長 職印의 規格 등 諸 規定이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官印規則으로 되어 있으나 同 規則을 廢止하고 公印條例를 制定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바 事務管理規程 大統領令 第13390號 第41條에 條例로 定하도록 規定된 것을 根據로 本 條例를 制定하는 것이므로 妥當한 案이라고 判斷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內容과 餘他部分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에 의하여 書面報告로 같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關聯法令과 條例를 면밀히 살펴서 審査報告한 대로 可決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瓌會 그러면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所管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公印條例案에 대해서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이상 2件이 各各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